

제 7411 호
1988. 5. 11

발행처: 서울특별시청 김 용 래
 편집인: 권 오 경 서 경 회
 간 호: 735-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35-3337

시 보

차 례

① 조 례
 제 2356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3

② 고 시
 제 342 호 : 공원입장료물징수할수있는공원지정 4
 제 343 호 : 연단의최고가저변경 5
 제 345 호 :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 6
 제 346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
 제 34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0
 제 34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0

(이면계속)

내 용																				

1. 시 공무원등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49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1
제 35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1
제 352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2
제 353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2
제 354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3
제 35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3

㉔ 공 고

제 313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	14
제 314 호 : 전기공사업면허취소및영업정지처분	14
제 315 호 : 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	15
제 316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	15
제 318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	15
제 322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	16

㉕ 사 령

조 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성중 개선계획을 이에 공포한다.

1988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김용택

◎ 서울특별시조례 제 2356 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성중개선계획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성중 개선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중 공통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일예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분	운동장사용	1회 3.3제곱미터당	15	
	사진촬영 (상시영리행위)	1일 1년당	110,000	
	영화촬영	주간 1회당	55,000	야간은 주간의 2배
	녹화	1시간당	11,000	
		초과시간당	5,500	
	유희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	○ 시설규모, 부자비, 기존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함. 다만, 사유지상 민자시설의 사용료는 인근시설의 사용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승인함. ○ 어린이 수영장은 관리운영비 범위안에서 정함		

- (가) 단채는 기본요율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인허가정할 수 있음
- 어린이: 만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 청소년: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
- 어 른: 어린이, 청소년 및 만

3세이하의 자외의 자

- 단 채: 30일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공 원 입 장 료

공 원 별		사 용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어 린이 대 공 원		어 른 1 회 당	600	• 단체는 기본요금의 30퍼 센트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음
		청 소 년 1 회 당	300	
		어 린이 1 회 당	0	
서 울 내 공 원	동 불 원	어 른 1 회 당	1,000	• 조기 산책의 경우에는 월당 공원 입장료의 10 일분을 징수함
		청 소 년 1 회 당	800	
		어 린이 1 회 당	500	
	늘 이 동 산	어 른 1 회 당	2,500	
		청 소 년 1 회 당	1,600	
		어 린이 1 회 당	800	
철 목 계 1 근 름 공 원		어 른 1 회 당	800	
		청 소 년 1 회 당	600	
		어 린이 1 회 당	500	

(주) 어린이 : 만 7 세 이상 12 세 이하
 의 자
 ○ 청 소 년 : 만 13 세 이상 18 세 이
 하 의 자
 ○ 어 른 : 어린이, 청 소 년 및 만
 6 세 이하 의 자 의
 의 자
 ○ 단 체 : 30 인 이상 동 일 목 적
 으 로 동 시 에 입 장 하 는
 인 원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42 호

공원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지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을 지정 고시합니다.

1988 년 5 월 1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p>1. 공원명칭 : 서울대공원 놀이동산</p> <p>2. 공원구역 및 면적 : 경기도 파천시 박계동 132 번지 일원 830,000 ㎡</p> <p>3. 설치 및 사업시행자 : 한미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 상 유</p>	<p>◎ 서울특별시고시제 343 호 연탄의 최고가격변경</p> <p>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력자원부고시 제 88-20 호 ('88.5.9)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의 연탄 최고가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 5. 11 서울특별시장</p>
---	--

다 음

1. 연탄의 최고가격 (단위: 원/개)

구 분	탄 중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가정도가격
현 행	3.6 ㎏ 연탄	160	177	187
변 경	3.6 ㎏ 연탄	167.25	185	195

- 공장도가격 167.25 원/개은 석탄산업법 제 29 조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안정기금 0.25 원/개 이 포함되어 있음
- 판매소가격 185 원/개은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12.75 원/개 (상하차비 각 1 원/개 포함)과 판매소수수료 5 원/개 이 포함되어 있음
- 가정도 가격 195 원/개은 연탄

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데 필요한 배달료 10 원/개 이 포함되어 있음

부 칙

1. 이 고시는 1988.5.10 00:00 시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부터 서울특별시고시 제 242 조 ('87.4.9) 는 폐지한다.

<p>◎서울특별시고시제 345 호</p> <p>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p> <p>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 5 조</p>		<p>별표 2 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시설사용료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p> <p>1988. 5. 11</p> <p>서울특별시장</p>			
		종 별	공 원 별	시 설 명	사 용 거 준
유치시설	서울대공원 놀이동산	아기다람쥐	어 른 1 회	400	
			청소년 1 회	300	
			어린이 1 회	200	
		회전목마	어 른 1 회	400	
			청소년 1 회	300	
			어린이 1 회	200	
		I.Q 오락장	어 른 1 회	100	
			청소년 1 회	100	
어린이 1 회	100				
사 격 장	어 른 1 회	200			
	청소년 1 회	200			
	어린이 1 회	200			
화랑활터	어 른 1 회	300			
	청소년 1 회	300			
	어린이 1 회	300			
박치기보트	어 른 1 회	600			
	청소년 1 회	400			
	어린이 1 회	300			
투지개자전거	어 른 1 회	500			
	청소년 1 회	400			
	어린이 1 회	300			

종 별	공 련 별	시 설 명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유 회 시 설	서 울 대 공 원 놀 이 동 산	한 나 리 열 차	어 른 1 회	900	
			청 소 년 1 회	700	
			어 린 이 1 회	500	
		박 치 기 차	어 른 1 회	1,000	
			청 소 년 1 회	800	
			어 린 이 1 회	500	
		요 계 편 대	어 른 1 회	700	
			청 소 년 1 회	500	
			어 린 이 1 회	400	
		운 라 열 차 388	어 른 1 회	1,300	
			청 소 년 1 회	1,000	
			어 린 이 1 회	700	
꼬 마 기 차	어 른 1 회	700			
	청 소 년 1 회	500			
	어 린 이 1 회	400			
개 구 장 이 열 차	어 른 1 회	500			
	청 소 년 1 회	400			
	어 린 이 1 회	300			
급 류 타 기	어 른 1 회	1,500			
	청 소 년 1 회	1,200			
	어 린 이 1 회	700			
아 야 기 나 라	어 른 1 회	2,300			
	청 소 년 1 회	1,600			
	어 린 이 1 회	1,100			
마 그 나 림	어 른 1 회	2,500			
	청 소 년 1 회	1,800			
	어 린 이 1 회	1,300			

종 별	공 원 별	사 실 명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유죄시설	서울대공원 놀이동산	그랑프리경주	어 른 1회	800	
			청소년 1회	600	
			어린이 1회	500	
		팽이그네	어 른 1회	700	
			청소년 1회	600	
			어린이 1회	400	
		운철기갑	어 른 1회	400	
			청소년 1회	400	
			어린이 1회	400	
		마법의 양탄자	어 른 1회	1,100	
			청소년 1회	800	
			어린이 1회	600	
이상한집	어 른 1회	600			
	청소년 1회	500			
	어린이 1회	400			
지하별당	어 른 1회	2,300			
	청소년 1회	1,600			
	어린이 1회	1,100			
탐험선	어 른 1회	1,900			
	청소년 1회	1,400			
	어린이 1회	900			
천문관	어 른 1회	1,100			
	청소년 1회	800			
	어린이 1회	600			
낙하산	어 른 1회	400			
	청소년 1회	300			
	어린이 1회	200			

종 별	공 원 별	시 설 명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유희놀이	서울대공원 놀이동산	왕문어잠	어 른 1 회	1,100	
			청소년 1 회	800	
			어린이 1 회	600	
		미 로	어 른 1 회	600	
			청소년 1 회	400	
			어린이 1 회	300	
		어린이장장	어 른 1 회	700	
청소년 1 회	500				
어린이 1 회	300				
코끼리비행기	어 른 1 회	400			
	청소년 1 회	300			
	어린이 1 회	200			
리모콘카	어 른 1 회	300			
	청소년 1 회	300			
	어린이 1 회	300			
리모콘보트	어 른 1 회	200			
	청소년 1 회	200			
	어린이 1 회	200			

◎ 서울특별시고시제 34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88. 5. 11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국토주택 건설

3. 사업시행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21-18, 19호
 나. 대지면적 : 2,139.70㎡
 다. 용도 : 일반분양 연립주택
 라. 규모 : 연립 3층 2동 39세대
 부대부리시설
 마. 건축연면적 : 2,749.56㎡
4. 사업시행기간 : 1988.5 ~ 1988.12
 첨부 : 설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4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5.11
서울특별시장

— 다 — 음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광동주택 박선회외 3개업소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 가. 위치 : 송파구 삼전동 28번지 17의 3필
- 다. 대지면적 : 1,047.5㎡
- 다. 용도 : 임대연립주택
- 라. 규모 : 연립 3층 1동 18세대
 부대부리시설
- 마. 건축연면적 : 1,444.72㎡
4. 사업시행기간 : '88.5 ~ '88.10
 첨부 : 설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48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다 — 음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동아주택 박은상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43번지 17의 5필지

나. 대지면적: 3,195.80 ㎡
 다. 용 도: 일반분양연립주택
 라. 규 모: 연립 3층 4동 63세대
 대 부대부리시설
 마. 건축연면적: 4,589.16 ㎡
 4. 사업시행기간: 1988.5 ~ 1988.12
 첨부: 설계도서 (생략)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송파구 석촌동 227-5의
 5필지
 나. 대지면적: 1,430.80 ㎡
 다. 용 도: 임대연립주택
 라. 규 모: 연립 3층 1동 24세대
 부대부리시설
 마. 건축연면적: 2,110.08 ㎡

◎서울특별시고시제 34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 5.11
 서울특별시장

— 다 — 음 —

-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 사업주체: 광동주택 박선회외 4
 개업소

◎서울특별시고시제 35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 5.11
 서울특별시장

— 다 — 음 —

-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 사업주체: 광동주택 박선회외 4개

<p>업소</p> <p>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p> <p>가.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100-6</p> <p>나. 대지면적 : 1,574.60 ㎡</p> <p>다. 용 도 : 임대연립주택</p> <p>라. 규 모 : 연립 3층 1동 24세대 부대복리시설</p> <p>마. 건축연면적 : 2,097.28 ㎡</p>	<p>2. 사업주체 : 보광건설 주식회사 김기환</p> <p>3. 사업시행지 및 위치면적규모</p> <p>가.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544-10, 12</p> <p>나. 대지면적 : 8,719.31 ㎡</p> <p>다. 규 모 : 아파트 5층 6동 210세대</p> <p>4. 사업기간 : 1987.11 ~ 1988.11</p>
<p>◎서울특별시고시제 352 호</p>	<p>◎서울특별시고시제 353 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p>
<p>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544 -1 의 1 필지상에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주택건설 촉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방우동 137 의 1호의 5 필지상에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p>
<p>1988. 5.11 서울특별시장</p>	<p>1988. 5.11 서울특별시장</p>
<p>1. 사업명 : 민영주택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p>	<p>1. 사업명 : 민영주택 (연립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p>

- 2. 사업주체: 원흥주택건설(株)
대표 정 연 국
- 3. 사업시행지 및 위치 면적 규모
가. 위 치: 중랑구 망우동 137의
1호의 5필지
나. 대지면적: 4,495.10㎡
다. 규 모: 연립주택 3층 2동
66세대
- 4. 사업기간: '87.12~'88.12

◎서울특별시고시제 35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 5. 1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 2. 사업주체: (株)유성공영건설 대표이사 박 철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관악구 신림동 산 28-9의

3필지

- 나. 대지면적: 3,113㎡
- 다. 건축연면적: 9,111.54㎡
- 라. 규 모: 아파트 12층 1동
110세대
- 마. 사업시행기간: 1988.5~1989.6

◎서울특별시고시제 35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26번지 호의 9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 5. 11

서울특별시장

- 1. 사업명: 망우동 경남아파트 신속공사
- 2. 사업주체: 경남기업주식회사 박 근 호
- 3. 사업시행지 및 위치 면적 규모
가. 위 치: 중랑구 망우동 226번지
의 9필지

<p>나. 대지면적: 13,600.55㎡ 다. 규 모: 아파트 5층 6동 250세대및부대복지시설 4. 사업기간: 1988.5 ~ 1989.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공 고 </div> <p>◎서울특별시공고제 313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p> <p>전기공사업법 제30조 5항의 규정</p>	<p>에 의거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다음과 같이 실효처분 하였기 동법 제 4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5.1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다 - - 음 -	

면허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사 율
제 22호	철송전기	성북구 삼선동 1가 17	이은정	전기공사업 폐지

<p>◎서울특별시공고제 314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공사업면허취소및영업정지처분</p> <p>전기공사업법 제31조 및 29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허취</p>	<p>소 및 영업정지처분 하고 전기공사 업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5.1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면허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처 분 사 항	사 율
제 2종 1068	상아전용 건설㈜	와룡동 74	최진지	면 허 취 소	전기공사업법 제 7조 위반
제 2종	대영전업사	봉의동 52	조병진	영업정지 2개월 ('88.5 10.-88.7.10)	국 세 체 납

◎서울특별시공고제 315 호 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 전기공사업 제 30 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편리 실효처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8. 5.11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실효일자	실효사유
954	미주중전기㈜	종로구승인동 1375	윤여갑	'88.5.4	채 업
◎서울특별시공고제 316 호 제 2 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2 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8. 5.11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항	사유
제 2 종 173	동남전기공사	교남동 74	김정남	영업정지 2 개월 ('88.5.10 ~ '88.7.10)	전기공사업법 제 33 조 위반
◎서울특별시공고제 318 호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제 2 항 제 3 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 2 종 전기		공사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8. 5.11 서울특별시장			

— 약 —

면허번호	업 적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용
666	정선전기공사	유훈중	양천구신철동 601-21	영업정지 2개월 (88.5.9-7.8)	전기공사업법 제 38조 제 2항 제 3호 위반

◎서울특별시공고제 322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취소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제 1 호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

허를 취소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88. 5. 11

서울특별시 장

가. 면허취소 내역

면허번호	업 적 명	대표자	소 재 지	취소일자	사 유
제 2 종 제 598 호	삼일전기공사	민명구	동대문구용두동 727-4	88.5.12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위반--동법 제 31 조 1 호 조지(면허취소)

사 령

◎ 1988년 5월 11일자

명제 144 호

성 명	발 령 부 서	발 령 지 위	발 령 직 급	비 고
김 광 태	새중문화회관 무대공연 담당관	공연담당	지방행정직 6급 상당	신 규
이 건 경	"	공연담당	지방행정직 7급 상당	
황 역 영	"	프로그램	지방행정직 6급 상당	

서울특별시 장